

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김 종 일 의원)

의안 번호	4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3. 3.

발 의 자: 김종일·김한태·백일권·
오연환 의원

1. 제정이유

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3. 제정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웰다잉 문화 조성”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.
2.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”란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 추진 등)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
 2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
 3.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
 4.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육성 사업
 5.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의 유지)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 법령

□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·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